

의안번호	2203048
의 퇴 인	정연욱 의원
회 답 일	2024. 9. 30.
추 계 번호	24F305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45조의3제4항 신설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	○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조정 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3제4항 신설(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순환자원이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가운데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상의 기준을 충족한 물질 또는 물건을 인정 또는 지정한 자원을 말함
- 그러나 순환자원거래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에 따른 세수효과는 순환자원거래의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특정인의 이익¹⁾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

1)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(증여 의제)에 있어 그

다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최근 3년간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의제의 결정세액 현황을 살펴보면, 2020년 2,258억원, 2022년 1,825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,683억원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1] 최근 3년간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의제 결정세액 현황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결정세액	2,258	2,600	1,825	6,683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

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

- (대기업):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×(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- 5%)×(지배주주 등의 지배비율)
- (중견기업):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×(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- 20%)×(지배주주 등의 지배비율 - 5%)
- (중소기업):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×(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- 50%)×(지배주주 등의 지배비율 - 10%)